

## 안산시의회

###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852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0. 2. 8.

발 의 자 : 김명환 의원

외 7 인

#### □ 제 안 이 유

- 지방의회의 “정기회”를 “정례회”로 변경하고,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이 개정(‘99.8.31 법률 제6002호)되고
-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시행령 관련조항이 개정(‘99.12.31. 대통령령 제16,672호)됨에 따라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관련 조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함.

#### □ 주 요 골 자

- 매년 “정기회” 기간중 7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매년 “제1차 정례회”기간중 7일 이내에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2조)

#### □ 참 고 사 항

- 관계법령
  -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제19조의4

## 안산시의회

###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정기회”를 “제1차 정례회”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감사)①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기회 기간중 7일 이내로 실시하되,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.</p> <p>③~⑤(생략)</p>	<p>제2조(감사)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.....제1차 정례회..... ..... ..... ..... .....</p> <p>③~⑤(현행과 같음)</p>